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거래 약정서

【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거래】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앞

본 인 :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 1 장 공통사항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거래를 포함)

- ① 내국신용장발행거래
- ②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거래

#### 제 2 조 권리의 행사

- ①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의 경우에는 은행은 환매채권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담 보

- ① 본인은 제 1 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제 1 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대금을 본인의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제 1 조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고시한 대

고객 매입을 또는 매도율로 합니다. 다만, 제 11 조 단서의 경우등 은행의 미수금 계정 처리일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매도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 ① 본인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한 제 1 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② 은행은 제 1 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 ③ 제 1 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은행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청구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제 6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 제 7 조 준용규정

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 규약, 「무역업무자동화 처리표준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2 장 내국신용장발행에 대한 특약

#### 제 8 조 지급금액

본인은 은행의 내국신용장 발행에 따라 은행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내국신용장 원화금액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부기외화금액에 매입(추심)은행이 환어음을 매입(추심)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청구한 금액
- ② 순수외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금액
- ③ 순수원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원화금액

#### 제 9 조 구매물품의 처분

- ①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②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은행은 본인이 관계당사자(발행은행,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 11 조 결제일

본인은 내국신용장환어음등의 도착일로부터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일이내에 결제합니다. 다만, 기일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 12 조 은행의 면책

은행은 내국신용장조건에 따른 내국신용장환어음의 지급, 인수 등을 함에 있어서 서류가 문면상 내국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모든 서류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은 서류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관련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변조 또는 법적효력
2. 관련서류상에 표시되어 있는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또는 실재여부
3. 화물의 매도인,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보험자, 기타 관련자의 성실성,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등

#### 제 13 조 위험부담 등

본인은 화물운송인 또는 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운송의 정지, 지연 또는 화물의 미도착, 연착, 멸실, 훼손, 변질, 품목의 상이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당해 화물에 관한 입고, 보관, 보험, 기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제 14 조 서류제출

본인은 은행이 법령 등에 의한 상당한 사유로 이 약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허가서, 추천서, 증명서, 신고서 기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곧 제출합니다.

### 제 3 장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15 조 내국신용장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진정

본인은 은행에 제출하는 내국신용장환어음(화물대금, 기타 대금지급에 관한 환어음, 영수증 또는 이들과 동종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거래에 수반하는 관련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신용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가 충분, 정확, 진정, 유효하고 신용장의 조건, 매매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 제 16 조 보증서 등 제출

- ① 본인은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 매입 후 내국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하자통보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시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함이 없이 내국신용장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의뢰서 등에 하자사항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처리로 말미암은 비용 및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제 17 조 매입대금상환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이나 내국신용장환어음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모든 환어음
  2.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급거절되는 경우의 그 환어음
-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일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은 매도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18 조 환어음 등의 반환**

-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인)